



"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 "

한국가스안전공사



받 음 수신자 참조

참 조

제 목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

1. 귀 협회(연합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굴착공사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, **굴착공사 개시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**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3. 동 제도는 상·하수도, 가스, 전기, 통신, 도로, 건물 신축공사 등의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 매설 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면 **가스폭발 위험**과 함께 **인명피해를 초래**하고,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, **굴착공사 전에 지하 매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**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<미신고 벌칙사항>

- ◆ **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(벌칙)**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◆ **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(벌칙)**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4. 반면, 최근 공동주택, 학교 등 사용자 부지 내에서 미신고 굴착공사로 인한 매설배관 손상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굴착공사 신고제도를 재차 안내하오니 협회(연합회)에서는 회원사가 굴착공사를 개시하기 전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.

붙 임 :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. 끝.

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



수신자 :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건설협회, 대한주택관리협회, 대한건설기계협회, 한국태양광산업협회, 한국상하수도협회, 한국패시브건축협회, 공육굴삭기협회, 월간중기인, 전국건설기계연합회

차장 김나현

전결08/27
센터장 이충경

협조자

시행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-851 (2019.08.27.) 접수

우 06332

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

/ www.kgs.or.kr

전화번호 02-2038-3981

팩스번호

0505-106-4501

/ nhk@kgs.or.kr

/ 공개